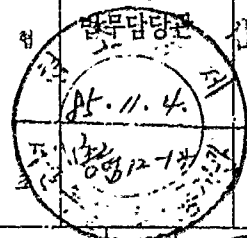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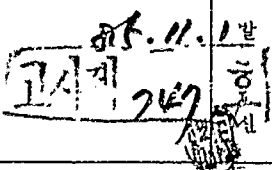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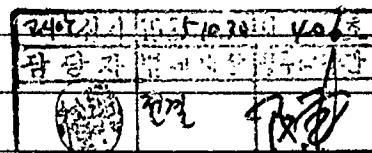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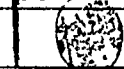


# 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시설 30312- 368	(현이번호 731-6349)	전결규정 조항 전결사항
처리기간	시 장		
시행일자	85. 10. 31		
보존연한	영구		
보조기관	도시계획국장	전결	
	시설계획과장	<i>[Handwritten Signature]</i>	
	가로계획2계장	<i>[Handwritten Signature]</i>	
기안책임자	김영환	85. 10.	
경유수신참조	각안삼조		
제목	도시계획시설(하천) 결정		
제1안	내부결재		
<p>1. 관내내곡동 1의344-란천합류점 일대 하천에 대하여 치수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(하천) 결정요청이 있어 내용 검토한바, 기존 세곡천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고시 및 시행코자합니다.</p> <p>2. 본건은 우리시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(85.10.11)에서 심의 가결되었습니다.</p>			
제2안	고시안		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			
도시계획시설(하천) 결정			
<p>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하천)을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1항 1호 나목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</p>			
<p>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			
1985. 11. 1			

서울특별시

○ 시설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폭원(M)	연장(M)	비 고
신설	하천	강남구내곡동 1의344 -	7-42	4,850	
		탄천합류점			

\*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제3안

수신 : 건설부장관(도시시설계획과장)

제목 : 같음

1. 우러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하천)을 별첨과 같이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관계도면 1부

제4안

수신 : 총무처장관(시:공보관)

발신 : 시(국)장

제목 : 관(시)보 게재의뢰

1. 다음과 같이 관(시)보 게재요청합니다.

가. 게재구분 : 고시

나. 게재건명 : 도시계획시설(하천) 결정

다.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 제12조

라. 게재내용 : 별첨 고시문

첨부 : 고시문 사본 2(1)부

제5안

수신 : 치수과장

제목 : 같음



1. 치수30520-1268호(85.8.28)와 관련입니다.

2. 위호로 요청하신 강남구내곡동1의344-탄천합류점간 하천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하천) 결정 고시하였기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,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한 지적승인 절차 이행하시고

3. 사업시행전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및 농지전용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

제6안

수신 : 강남구청장(도시정비과장)

제목 : 같음

1. 귀구관내 도시계획사항이 별첨과 같이 고시되었기 통보하니 관계도면 정리를 하여 도시계획 관련업무에 착오 없기 바랍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

제7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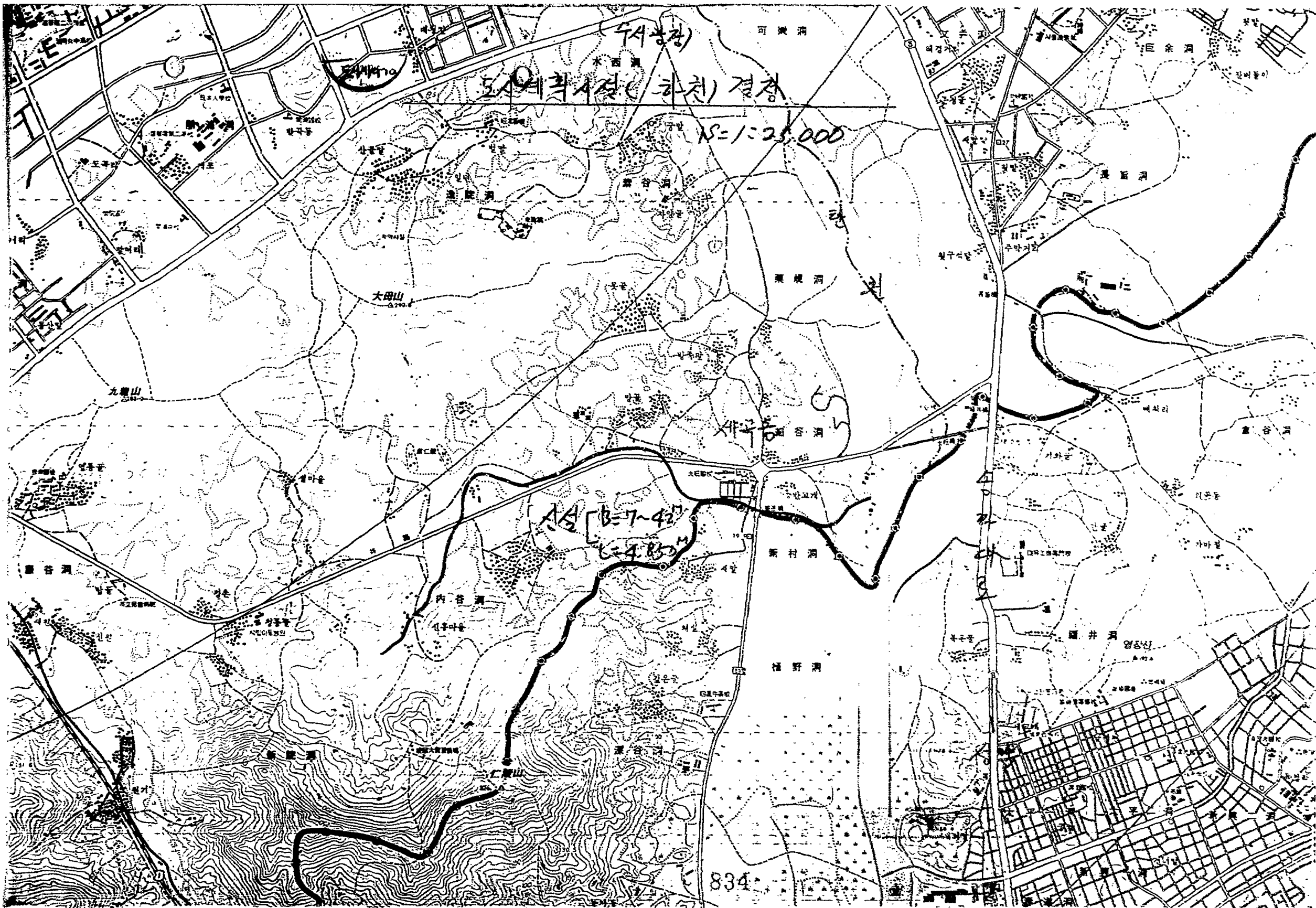
수신 : 도시계획과장

발신 : 과장

제목 : 같음

1.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하천)을 별첨과 같이 고시하였기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. 끝.



두서봉장

도시계획시설 (하천) 결정

N=1:25,000

A선 [B=7~42]

C=4.85M

834

大母山

九龍山

內谷洞

新井溪

新井溪